

의안번호	제 848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5년 3월 4일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848
----------	-----

제출연월일 : 2025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은 2001년 수목원 개원 이후 도민의 녹색 쉼터로서 연간 25만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충북 유일의 공립수목원인 미동산수목원 내에 향후 산림교육기관으로의 역량강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도민 맞춤형 힐링 숲체험 기회 제공 등 지속적인 산림문화 정착과 체류형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총 사업비 24억원, 부지면적 330m²에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10동을 조성하는 사업임
-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은 1995년 개장 이후 숙박시설 (숲속의집 등) 31동 44실을 설치하여 우리도에서 직접 관리중인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그 간 모든 노후 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개축 및 증축을 완료하였으나 주말 및 성수기에는 숲속의 집 예약이 조기 마감 되는 등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의 수요가 높은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숙박동 10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360m² 정도이고 총 사업비는 23억원임
-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은 축산시험장 이전계획('24~'29)에 따라 가용 초지를 활용하여 도립 파크 골프장을 조성,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스포츠 여가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414번지 일원 축산시험장 부지에 파크골프장(45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임
-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사업비 반영으로 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모노레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승강장 설치 및 전기공사 추가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여, 기 원안의결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 3,330 m², 총사업비는 54억원 정도임

※ (당초) '23.10.18. 공유재산관리계획(제413회 정례회, 의안번호413호, "원안가결")

- 음성소방서 땡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음성군 땡동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으로 다수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119안전센터 수준의 소방 인프라 확충 필요 등 현재의 소방력으로는 신속한 대응 한계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땡동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 및 신설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구하려 하는 것으로, 음성군 땡동면 쌍정리 248-3번지 일원에 연면적 990㎡(총1개동, 지상2층 규모)의 총사업비 57억원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미동산수목원 숲체험 연수원 조성》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사업규모 : 숲체험 연수원 10동 신축 ※ 부지면적 330㎡
- 사 업 비 : 2,400백만원(도비 100%)

《조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조성》

일반회계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795
- 사업기간 : '25. 1월 ~ 12월
- 사업규모 : 숲속의집 10동 신축 ※ 부지면적 360㎡
- 사 업 비 : 2,308백만원(도비 100%)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일반회계

- 용 도 :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14번지
- 사업기간 : '25. 1. ~ '25. 12.
- 소요예산 : 47억원(도비 100%)
- 사업규모 : 파크골프장 조성(45홀), 편의시설, 주차장 *부지면적 71,711㎡
- 사업방법 : 위·수탁사업(충북개발공사)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변경》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사업기간 : 2024. 1. ~ 2025. 9.
- 사업규모
 - ▶ 당 초 : 1,750㎡(L=350m, B=5m) / 40인승
 - ▶ 변 경 : 3,330㎡(L=333m, B=10m) / 40인승 (증 1,580㎡)
- 사 업 비
 - ▶ 당 초 : 3,950백만원
 - 모노레일 조성 : 3,950백만원
 - ▶ 변 경 : 5,430백만원(증 금1,480백만원)
 - 모노레일 조성 : 3,950백만원, 건축 : 934백만원, 전기 : 546백만원
- 변경사유
 - 공사 시행 시 대형장비 사용에 따른 여유폭 고려로 사업 면적 변경
 - 승강장 및 전기공사 추가사업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특별회계

-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8-3번지 외 14필지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완료 시
- 사업규모 : 연면적990㎡(부지 4,990㎡)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1개동
- 사 업 비 : 5,694,266천원

(단위: 천원)

건축비	건설사업관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4,290,898	1,133,024	254,894	15,450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3개소	990	5,158,100				
	기타	1개소	3,330	5,430,000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330	2,400,000	2025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조성	-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795	360	2,308,100	2025	숲속의집 확대 조성	-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14	300	4,700,000	2025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	신축
4	토지							
	건물							
	기타	문의면 청남대길 646	3,330	5,430,000	2025	모노레일 설치 (사업면적, 사업비 증)	-	
5	토지							
	건물	이하여백						
	기타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개소	990	5,694,266				
	기타							
1	토지							
	건물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8-3 외 14필지	990	5,694,266	2025	맹동119안전센터 신축		
	기타							
2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